**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 지원 양식**

**(1) 기본정보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질문** | **답변** |
| 1. 회사명을 기재해주세요. |  |
| 2. 상장여부 및 상장된 시장을 기재해주세요. |  |

**(2) 감사인선임위원회\* 구성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현재 구성인원수****(최소 5인)** |
| 1. 감사 1명 |  |
| 2. 사외이사 2명 이내 |  |
| 3.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|  |
| 4. 주주 1명 |  |
| 5. 최다 채권액 금융회사 임직원 1명 |  |
| 6. 총 인원수 |  |

\*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, 대형비상장주식회사, 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을 위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

**(3)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정보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답변** |
| 1.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일시 |  |
| 2.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장소 |  |
| 3. 필요한 외부전문가 인원수 |  |
| 4.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구성 지원이 필요한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. |

**(4) 개최일 예상 참석인원(최소 4인)**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감사** | **사외이사** | **기관투자자** | **주주** | **채권자** | **총 참석 예상인원수** |
| 참석 예상안\* |  |  |  |  |  |  |

\* 현재 현황에 따른 참석, 불참, 미정, 연락 두절 등의 예상되는 참석 여부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. (외부전문가 제외)

**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Key point**

**1. 감사인선임위원회 정원 - 최소 5명, 최대 6명**

**2. 감사인선임위원회 출석 - 최소 4명**

재적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(4인)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

**3.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**

**3-1. 감사** : 반드시 상근감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.

**3-2. 사외이사** : 외부감사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에 따른 사외이사를 의미함,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사외이사로 볼 수 없음.

**3-3. 기관투자자의 임직원** :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이에 해당함.1)

**3-4. 주주** :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,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,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를 제외하고,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이 이에 해당함(영 제12조 제2항 제4호).1)

**3-5. 최다 채권액 금융회사 임직원** :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이에 해당함(영 제12조 제2항 제5호).1)

1) **기관투자자의 임직원, 주주, 최다 채권액 금융회사 임직원**: 주식, 채권의 소유여부는 형식적 명의로 파악하나, 실질적인 권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.

**4. 위원 자격자가 5인에 미달하는 경우**

회사에 따라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이 경우 결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선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. **다만, 외부전문가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\*에만 선임될 수 있음.**

**\*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위원이 없거나 질병, 외국 거주, 소재 불명, 연락 두절, 출석(대리출석 포함)거부 및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**

외부전문가란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1)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,회계,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2)을 갖춘 사람을 의미함. 다만 이 경우 감사는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 사유를 문서로 작성, 관리하여야함(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).

**1)** 법규상 정의는 없으므로, 독립성의 유무는 법규의 취지(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,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임.

**2)** 외부전문가의 자격이 되는 전문성이란 반드시 변호사,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, 회사는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.

중소기업 회계감사지원센터의 외부전문가 지원은 **상기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** 가능합니다.